

정보교류 차단 및 이해상충관리에 관한 지침

2021. 5. 20 제정

2022. 4. 20 개정

제1절 정보차단벽

제1조 (목적)

본 지침의 목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45 조(정보교류의 차단), 제 91 조(장부·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및 당사 내부통제기준의 이해상충 방지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회사가 영위하는 금융투자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설정 및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 기준)

① 회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의 교류를 차단한다. 단, 투자유의종목, 시장정보 종목과 같이 시장이벤트 내지 크레딧 이벤트등이 발생하거나 기업가치를 훼손하는 이슈등으로 매스미디어에 회자된 기업이 발행한 증권의 보유 여부나 대처방안등에 관하여 판매회사 및 투자자에게 정보교류가 필요한 경우는 이 지침과 상관없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법 제174조 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및 투자일임재산의 구성 내역과 매매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고유재산으로 투자한 자산의 구성 내역과 매매에 관한 정보
5. 법규의 제·개정이나 업무영역 확대 등으로 인하여 이 지침의 목적상 정보교류의 차단이 필요하다고 준법감시인이 지정하는 정보

② 제2조 ①항 1호에서 정한 미공개중요정보의 식별기준은 상장법인 및 상장예정법인 (즉, 6개월 이내에 상장하는 법인 또는 6개월 이내에 상장법인과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그 밖에 기업결합 방법에 따라 상장되는 효과가 있는 비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되어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로써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제3조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의 설정 및 책임자의 지정)

- ① 업무상 제2조 1항 각호에서 정하는 정보를 접하는 본부 또는 팀을 정보교류 차단의 대상이 되는 부문으로 설정하며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임직원은 해당 본부 또는 팀에 속한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 관련한 법규와 사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주식운용부문하의 모든 본부장
 2. 채권&솔루션부문하의 모든 본부장
 3. AI 본부장
 4. 기관마케팅 팀장
 5. 경영지원팀장
 6. 펀드회계팀장
 7. 컴플라이언스팀장
 8. 리테일마케팅팀장
- ② 회사의 조직개편이나 1항 각호의 명칭 등의 변경이 생길 경우 준법감시인은 이 지침의 변경이 없어도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별 책임자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 및 운영)

- ①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회사의 정보교류 차단 정책이나 지침을 총괄하는 정보교류 통제 담당 조직 및 책임자로서 컴플라이언스팀과 준법감시인을 지

정한다.

- ②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은 정보교류 통제 책임자와 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 지정
 - 2. 정보교류 차단 부문 설정 및 부문별 책임자 지정
 - 3. 정보교류 차단 정책 또는 지침의 제언
 - 4. 교육 및 정보교류 차단 관련 공시의무 이행
 - 5. 기타 정보교류 차단 관련 이슈 모니터링 및 조언

제 2절 사내 정보교류 차단 방법 및 예외적 교류

제5조 (정보교류 차단의 일반 원칙)

- ①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상 접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정보를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동일 부문 또는 동일 팀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면 아니된다.
- ③ 모든 임직원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우연히 접근하게 된 경우 지체없이 컴플라이언스팀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④ 준법감시인과 컴플라이언스팀은 1항내지 3항의 모든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승인절차,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사용 내역 보고 등 모니터링 체계를 운영한다.

제6조 (상시적인 정보 교류의 차단 장치)

- ① 컴플라이언스팀과 정보시스템 담당자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반드시 필요한 임직원에게만 허용되도록 정보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또는 팀의 임직원은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및 팀의 임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7조 (정보교류 차단의 예외적 교류 및 기록 유지)

- ①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이 이행될 것을 전제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또는 팀간이나 정보교류차단 대상이 아닌 부문이나 팀과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 1.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것
 - 2.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내용 및 정보교류의 이유, 정보 제공자 및 수령자의 소속 및

성명, 정보교류 일시, 승인자의 소속 성명 등을 기록한 정보교류차단 예외신청서의 작성 및 제출

3. 제3조 1항 각호에서 정한 정보교류차단 책임자와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계속적 반복적 교류를 위한 포괄 승인 포함)
 4. 교류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할 것
 5. 제공받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할 것
 6. 본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제공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또는 팀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을 준수할 것
 7.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교류와 관련한 신청서 등의 기록은 컴플라이언스팀에 제출되어야 하며 최소보존기간 5년을 유지 관리할 것
 8. 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차단 총괄책임자로서 연1회 이상 정보교류 차단 예외 등에 관한 기록 유지 상태를 점검할 것
- ② 회사가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게 하기 위하여 상시적으로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임직원은 다음과 같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3. 컴플라이언스팀원
 4. 기타 업무상 정보교류가 상시적으로 필요하다고 사전에 승인 받은 임직원
- ③ 제2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 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금지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절 사외 정보교류 차단 및 투자자에 대한 정보 교류

제 8 조 집합투자증권 판매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2조1항 각 호의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하려면 2항과 3항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회사의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 (이하 동조에서 "집합투자증권 판매사")
 2. ~~신탁업자~~계열회사
 3. 이 외 준법감시인이 지정한 자
- ② 제공하는 자는 제공하는 정보의 종류와 내용, 제공목적등에 관하여 [별지1] 정보제공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1개월이 지난 정보를 집합투자증권 판매사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없이 소관부서 팀장

의 확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 ③ 제공하는 부서는 제공정보의 내역을 기록하고 최소 5년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 9 조 투자자에 대한 정보 제공

- ① 투자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 및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합투자재산 명세서
2.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대장
3.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4.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② 투자자가 법 제91조에 근거하여 ①항 각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 회사는 다음 각호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투자자가 ①항 본문의 정보를 요청하는 이유와 투자자임을 확인하는 판매회사의 확인이 기재된 서면을 청구한다. (별지2참조)
 2. 1호의 서면에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정보를 요청 이유(목적)외에 이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한다.
 3. 투자자가 1호 및 2호의 요건을 구비하여 1항 본문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 팀장의 승인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4. 사모단독 또는 수인사모집합투자기구처럼 판매회사의 확인 없이도 투자자여부를 회사가 확인할 수 있는 경우(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기관투자자에 한정한다)에는 기관마케팅팀장(AI본부관련 집합투자기구는 AI팀장)의 확인으로 1호에서 정한 판매회사의 확인을 대신할 수 있으며 해당 팀장의 승인으로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투자자는 1호의 서면 대신 이메일로 요청 대상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요청 이유를 명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소관 부서는 목적 외 사용금지 및 타인과의 정보 공유 금지를 명확하게 기술한 후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5. 동항4호를 적용할 때 소관부서는 투자자가 보낸 이메일 및 정보제공내역을 해당 팀장에게 보고하여 사인을 득한 후 보관한다
 6. 3호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는 이해상충의 방지를 위하여 1개월이 지난 정보에 한하며 투자자가 1개월이 지나지 않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3]에 따라 준법감시인의 사전 승인을 득하는 경우에 제공할 수 있다.
 7. 4호에 따라 수익자가 요청하는 경우 법으로 정하는 사유로 명백한 이해상충을 야기하지 않는 한 1개월 이내의 정보라 하더라도 제공될 수 있다.
- ③ 1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는 부서는 제공한 정보의 내역을 기록하고 1항에서 정한 서면(이메일 포함)을 포함하여 최소 5년동안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4절 이해상충 관리

제10조 (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의 유형 및 이해상충의 관리)

- ① 모든 임직원은 이해의 상충을 피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이해상충의 거래 또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다음 각호의 절차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1. 모든 임직원은 실제 또는 잠재적 이해상충을 인지하였다면 즉시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에게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
 2. 보고 받은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은 이해상충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해상충을 회피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조언하고 협의하며 이해상충 관련자는 준법감시인의 조언을 준수하여야 한다.
 3. 중대한 이해상충은 준법감시인이 대표이사에게 보고한다.
 4. 컴플라이언스팀은 이해상충 보고사항 및 처리에 관하여 기록을 관리하고 유지한다.

- ② 이해상충의 우려가 있는 거래 유형 및 대응방안의 예시는 다음과 같다.

이해상충의 유형	제목	세부내용	이해상충 방지수단
회사 vs 고객	회사보유 증권 등에 대한 투자	회사가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상장주식등을 회사가 운용하는 집합투자기 구에서 집중 투자	고유재산운용과 신탁 재산 운용 간의 차이 니즈월 설치
	중개회사의 선정	조사분석자료보다는 회 사에 소프트달러를 많이 제공하는 증권회사에 약 정을 우선 배분	각 운용부문별로 중개 회사 선정기준이 적정 한 지를 준법감시인이 사전에 확인
	주요 고객의 인 사청탁	기관 고객이 친인척의 채용을 청탁함	복수의 후보 선정 및 다수 면접관의 만장일 치로 채용 결정
	의결권의 청탁	주요 판매회사가 상장계 열회사에 대한 우호적인 의결권행사를 청탁	의결권 행사 지침에 부합하는 의결권 행사 및 준수 여부 점검
임직원 vs 고 객	개인투자행위	임직원이 자기가 운용하 는 일임계좌보다 개인 계좌의 거래를 우선적으 로 처리	임직원금융투자상품 매매 업무지침 제정하 고 교육 및 준수여부 점검
	선물 및 향응의 수령	중개회사로부터 골프접 대를 받고 높은 평가점 수를 부여하거나 주문 수량을 증가시킴	재산상이익의 제공 및 수령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교육 및 준수 여부 점검
회사 vs 임직 원	대외활동 및 부 업	회사업무 이외의 사적활 동 등으로 인하여 회사	내부통제기준을 통해 사전보고 및 승인 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	무화
	인사청탁	인사담당 임원이 자기의 친족을 채용 하도록 하기 위해 유력한 지원자를 서류 탈락 시킴.	사전에 직속상사와 준법감시인에게 보고하고 본인은 해당 채용 과정에 참여하지 아니함.
고객 vs 고객	집합투자기구간의 Front running	동일한 운용역이 특정한 집합투자기구의 매매를 항상 최우선으로 집행	컴플라이언스팀은 Trading compliance 를 통해 모니터링하고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전거래	자전거래를 통하여현금화가 즉시 안되는 자산을 부적절한 가격으로 다른 집합투자기구에 매도	가격 및 조건 등을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세부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의무화

- ③ 임직원은 이해상충이 예상되는 경우를 피하여야 하나 우연히 또는 불가피하게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고객간의 이익은 상호 동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또한 회사의 이익은 임직원의 이익보다 우선하여야 한다.
- ④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회사는 이 지침 이외에도 내부통제기준을 비롯하여 미공개중요 정보 처리 지침, 의결권 행사 지침,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세부지침, 스튜어드십코드 관련 이해상충 방지 정책 등도 시행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별도의 정책이나 지침이 추가될 수 있고 임직원은 이러한 점을 유념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 (임직원의 겸직)

이해상충이 발생되지 않는다면 회사는 지배구조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절 기타

제12조 (임직원 교육 및 정보교류 차단 정책 등의 공개)

- ① 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하여 위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을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사항
 3.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준법감시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회사는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규정이나 지침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1년 5월 20일에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22년 04월 20일에 시행한다.

정보제공 승인 신청서

1. 승인 신청 일시 :

2. 사내/사외 여부 :

3. 정보제공 내용

정보 제공 부서	
정보 제공자 직책 및 성명	
정보 수령자 소속	
정보 수령자 성명 및 직책	
정보의 종류 또는 내용	
정보 제공 사유 및 목적	
정보 기준일	
정보 제공 주기(일회성/주기)	
최초 제공 일시 및 기간	
정보 제공 방법	
이해상충 관리 방법	
첨부	

4. 승인권자의 서명 날인

직속상사 :

부문별 정보교류차단 책임자 :

준법감시인 :

투자자 정보제공 신청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장부·서류 열람을 청구하오니 관련 자료를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 : 트러스톤자산운용(주) FAX : 02-6308-0687

수익자 관련사항	성명 (법인은 상호)		부서 (법인의 경우)	
	담당자(법인의 경우)		연락처	
정보청구 관련사항	대상집합 투자기구			
	정보 요청 목적			
	요청 정보의 종류 및 내용			
	제공방법			
	기준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을 위한 동의]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트러스톤자산운용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집합투자기구 가입자 확인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이름, 계좌번호, 연락처(E-mail, Fax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요청 자료 제공관련 업무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정보제공자에 대한 고지사항] 1. 제3자에 대한 제공 및 공유 등 수집된 개인정보는 본인의 동의 없이 상기 개인정보 취득목적에서 고지한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타인(또는 기타 기관 등)에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제외합니다. 1)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2) 감독기관이 검사목적으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2.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요청 : 언제든지 제공된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의 철회 : 언제든지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이나 처리 등을 중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로 인하여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제공 받은 자료는 상기 정보 요청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수익자	(인)
위 정보 요청인은 열람청구대상편드의 수익자임을 확인함	
20XX . . .	
판매회사	(인)
(제9조 2항 4호 전단의 경우) 기관마케팅팀장 또는 AI팀장	(인)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동법시행령 제95조에 의거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수익자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정보제공 승인 신청서

1. 승인 신청일:
2. 정보제공 내용:

정보 제공 부서	
정보 제공자 직책 및 성명	
투자자 성명(법인은 법인명)	
투자자 신청 정보	
정보제공 방법	
정보제공 일시	
비고	
첨부*	

*첨부분서는 별지2의 양식 또는 판매회사가 정한 양식으로서 수익자에 대한 판매회사의 확인과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고객의 확인이 표시된 문서

이해상충 보고서

1. 보고자의 소속, 직책, 성명 :
2. 보고 일시 :
3. 이해상충의 유형 :
4. (잠재적) 이해상충의 내용

5. 이해상충의 방지 또는 감소 방안 :
6. 서명 날인
보고자:
직속상사:
준법감시인: